

2007년 예금보험정책 심포지엄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2007. 5. 16(수)

주최 : 한국금융학회 · 예금보험공사

## 심포지엄 일정

- 13:40~14:00      등    록
- 14:00~14:05    개 회 사    이 지 순 한국금융학회 회장
- 14:05~14:10    환 영 사    최 장 봉 예금보험공사 사장
- 14:10~14:15    주제발표자, 토론자 및 진행방법 소개  
사 회 자: 하성근 (연세대 교수)
- 14:15~14:50    주제 발표:
  -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제도부문)  
신진영 (연세대 교수)
  -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계량부문)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 14:50~15:25
- 15:25~15:40    *Coffee Break*
- 15:40~17:10    지정토론 (가나다 순)
  - 김현욱 (KDI 연구위원)
  - 박영석 (서강대 경영대 교수)
  - 방영민 (삼성증권 상무)
  - 송양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 안치홍 (Milliman 소장)
  - 이민환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 이순재 (세종대 경영대 교수)
  - 이장홍 (대한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17:10~17:25    *Coffee Break*
- 17:25~17:55    질의응답
- 17:55~18:00    폐    회

# 2007년 예금보험정책 심포지엄

##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 일 시 : 2007년 5월 16일(수), 14:00~18:00

□ 장 소 : 예금보험공사 대강당(19층)

## 연구진

### <한국금융학회>

책임 연구원	윤 석 헌	(한림대학교)
간사 연구원	김 대 식	(한양대학교)
연구 원	김 경 수	(성균관대학교)
연구 원	김 범	(한림대학교)
연구 원	신 진 영	(연세대학교)
연구 원	이 종 욱	(서울여자대학교)
연구 원	이 준 행	(서울여자대학교)
연구 원	전 선 애	(중앙대학교)
연구 원	전 성 인	(홍익대학교)
연구 원	정 지 만	(상명대학교)

# 목 차

제 I 장	예금보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1
1.	금융안전망과 예금보험제도 .....	3
2.	목표기금제 도입 .....	4
3.	차등료율제 도입 .....	8
4.	요율체계 개편 .....	11
제 II 장	금융권역별 개선방안 .....	17
1.	은행권 .....	19
2.	증권권 .....	25
3.	종금권 .....	27
4.	보험권 .....	29
5.	저축은행권 .....	35
제 III 장	정량분석 .....	41
1.	신용 VaR를 이용한 예금보험료 산출 .....	43
2.	권역별 차등평가모형 .....	52
2-1.	은행권 .....	52
2-2.	보험권 .....	56
2-3.	저축은행권 .....	59

# 제 1 장 예금보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제 1 장 예금보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1. 금융안전망과 예금보험제도

### 1-1. 현황과 문제점

- 199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금융안전망체제의 기본정신은 권한 집중형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분권형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 및 협조를 통해 최적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아직껏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
  - 정상화된 금융산업에 적합한 감독기능과 예금보험기능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
    - 금융기관 인가부터 부실처리까지의 모든 금융감독 권한과 정보가 감독기구에 집중되는 현상은 예보의 건전한 기금관리 목적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
- 2003년 신예금보험기금 체제 출범 이후 예금보험기구는 기금관리의 건전화를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
  - 예금보험제도의 신뢰도 유지에 필수적인 신예금보험기금의 중장기적 자생력과 사전적 위험관리 수단의 확보를 통한 건전화 방안 수립이 필요함.
  -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부보금융기관들로부터 현행 예금보험제도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1-2. 금융산업과 예금보험기금 건전성 제고

### □ 개선방향

- 목표기금제 도입
- 차등료율제 도입
- 정보공유체제의 법제화
- 예보의 적기시정조치 과정 참여
- 적립기금관리의 투명화와 효율화 체제 확립

- 목표기금제와 차등료율제 이외는 두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이며, 금융안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

## 2. 목표기금제 도입

### 2-1. 목표기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2-1-1. 목표기금제 도입의 필요성

- 예금보험제도의 신뢰도 유지에 필수적인 신예금보험기금의 중장기적 자생력 확보와 부보 금융기관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필요

#### 2-1-2. 목표기금제 도입 추진방향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특별기여금은 현재대로 진행
  - 특별기여금은 과거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손실에 대비하는 목표기금제와는 구분 운영될 필요



□ 목표기금제 적용 단위는 권역별로 분리 운영하는 복수기금 방식

○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권역 간 통합이 미흡하고, 금융권역별 특성이 뚜렷하며, 기금의 손실위험 정도가 상이하여 복수기금 유지가 바람직

○ 권역별 도입 추진 기본방향

- 은행권, 보험권(생보권과 손보권 분리) 및 증권권은 우선 적용

- 저축은행권은 현재 적자상태인 기금보전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영업 및 재무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

○ 개별 금융권역별로 설정된 목표기금의 단순 합이 예보의 전체 목표기금 규모가 됨.

□ 권역별 목표기금의 수준은 해당권역의 운영비용과 함께 기대손실과 예상외 손실의 일정 수준(예, 99% VaR)을 감당하는 규모로 설정하며, 소프트 타겟(soft target) 방식으로 운영

□ 기금파산 시 대응

○ 기금파산은 권역별로 정의되며, 대상 권역에서 발생한 손실이 대상 권역에 설정된 목표기금 규모를 초과하는 상태로 정의

○ 권역별 기금파산을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각 권역에서 사후각출형식으로 부담

- 정부는 발생 손실이 일정한 권역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거나 또는 여러 권역에 걸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이를 시스템위기로 판정하는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대처할 필요

- 시스템위기 판정 절차 및 이에 따른 특별조치의 내용과 수준 등은 재정부, 한은, 감독당국, 예보 등의 고위직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에서 결정
- 기금적립 수준의 측정과 관리는 부보금융기관의 수신 규모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기금금액보다 기금적립률 사용
  - 기금적립률 측정 시기는 기금 결산 시(매년말 기준)로 함.
- 목표기금 적립 시작 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함.
  - 손실규모가 손실발생 시점까지의 적립기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립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예보위원회가 보험료율과 목표도달기간 등을 사후 재조정
  - 손실규모가 손실발생 시점의 적립기금을 초과하지만 최종 목표기금 수준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 적립기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후정산방식으로 처리하되, 예보위원회가 사후정산의 구체적인 방안과 사후 재조정 방안 결정
  - 손실규모가 최종 목표기금 수준을 초과하는 초대형인 경우(기금파산)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금파산 시의 대응방안 적용
    - 이 경우 사후적으로 목표기금 재산정 및 이에 따른 요율과 기간 재조정 필요
    - 감독당국의 규제유예로 인한 손실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보의 적기시정조치 참여 및 최소비용원칙의 철저한 적용 등을 재산정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필요

## 2-2.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부수과제

### 2-2-1. 유동성 확보방안

- 일정 시점에서 발생한 손실이 설정된 목표기금 규모 보다는 적으나 기 적립된 기금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권역의 미래 보험료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유동성 확보방안 및 사후정산방안 마련이 필요

### 2-2-2. 기금파산 시 대응방안

- 기금파산 시 대응방안에 관련된 의사결정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범위를 사전적으로 정할 필요
  - 손실을 부담하는 예보가 필요성을 제외하고, 재정부, 감독당국, 한은, 예보로 구성되는 협의체에서 기금파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한 후, 재정부 장관의 건의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2-2-3.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 강화방안

- 목표기금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정책 목적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의 부여가 선행되어야 함.
  - 이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확보 및 적기시정조치 시행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차등료율제 도입은 사전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유효
- 부보금융기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는 것이 동 제도 성공의 관건이므로 금융감독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법제화할 필요

- 금융안전망 관련기관 간의 정책 협조와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재경부, 한은, 금감위/금감원, 예보의 고위직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하에 정보공유 실무부서를 법제화 할 것을 제안

### 3. 차등료율제 도입

#### □ 현황과 배경

- 현행 예금보험료율 체계는 권역별로는 차등화 되어 있으나 각 권역 내에서는 고정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왜곡된 유인과 형평성 문제 야기
- 예보가 사전적 위험관리자 기능 대신 단순히 보험료 수납과 지급 기능 수행에 그침으로써, 국가적 위험관리시스템의 비효율 초래
- 신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 확보와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기금제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의 필요성 대두

#### □ 차등료율제 도입의 원칙

- 예금보험 수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고 정리비용 최소화 원칙이 준수되며, 비보호채권의 무임승차가 발생하지 않고 시장규율이 강화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개편 초기에는 각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요율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기금을 분리 운영
  - 향후 권역 간 겸업화가 진전되고, 모든 금융권역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시점에서 기금의 통합 내지 기금 내 계정의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

- 목표기금을 달성한 후에는 기금적립 기여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효율체계 모색 필요

○ 목표기금 산정이 비현실적인 권역에 대해서는 목표기금제 도입을 유보하고 해당 업권의 부도율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기준요율을 상향 조정하되 요율의 차등 폭은 소폭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 향후 정기적(예: 2년 주기)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재검토

#### □ 차등료율제 도입 방안

○ 차등료율체계 결정 시 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와 부보기관의 재무건전성 변수 등을 고려할 필요

○ 부보기관들의 건전성 정도와 차등료율제 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시행하되, 보험료율 등 일체의 정보를 대외비로 유지

○ 객관적인 요율책정 기준을 마련하되, 도입 초기에는 차등 폭을 작게 하여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 차등료율제 시행을 위한 예보의 자료접근성 확보 필요

#### □ 도입 시기

○ 목표기금제와 차등료율제의 동시도입을 추진하되, 관련제도정비, 對 부보기관 설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도입하도록 함.

- 다만, 저축은행권은 차등료율제를 우선 시행하여, 목표기금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

#### □ 차등료율 산정

- 이론상 목표기금보험료율, 즉 매년 징수되는 보험료율은 (연간기대손실률 + 예상외 손실률)로 구성되며 이들 각각에 대해 해당 부보기관의 건전성 내지 보험기금 손실위험을 반영
- 현실적으로는 표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험기금 손실위험을 기술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보험료율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권역별 상대적 위험도를 고려한 정책적 결정 방법론도 고려
- 차등프리미엄은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시행 초기에는 등급간 보험료율에 큰 차이를 두지 않되, 차등료율제도가 정착되고 부보기관의 정확한 위험평가를 위한 제반 제도와 장치가 확립될 때 차등폭을 확대
- 구체적 차등료율 체계를 대외비로 하고 보안을 유지하되 차등료율제 시행에 앞서 부보금융기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함.

#### □ 보험료 수입에 미치는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 차등료율제 시행 시 등급이 높은 우량기관에 낮은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
  - 은행권의 경우 현행 고정요율(0.1%)을 표준요율로 하고 차등스프레드 15% 적용 시 2005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이 실제보다 290억원 이상 감소 추정

- 보험권의 경우 고정료율을 0.2%(생보) 및 0.25%(손보)로 하고 최대 차등 폭 7.5%를 적용 시, 2006.9월 기준으로 고정료율 적용 시와 비교할 경우 보험료 수입이 생보는 57억원 그리고 손보는 25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4. 요율체계 개편

##### □ 현황과 문제점

- 권역별로는 이미 차등화 되었으나 권역별 특성과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권역 간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 노정

##### □ 요율체계 개편의 원칙

##### ○ 형평성의 원칙

- 개편 초기에는 각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요율체계를 구축, 권역별 기금 손실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권역 간 무임승차의 문제를 완화
- 목표기금을 달성한 후에는 기금적립 기여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요율체계 구축

##### ○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조성

-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해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폐지하고
- 향후 예금보험 부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보기관의 보험료 인하를 도모

□ 목표기금제 도입과 효율체계

- 목표기금 조성을 위해 부과되는 효율은 개별 부보기관의 위험뿐만 아니라 목표기금의 규모와 예상도달기간에 의존
- 목표기간이 짧을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목표기간과 효율 간 상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개별권역의 목표기간을 최장 15년 이내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효율을 결정
- 연도별로 목표적립률에  $\pm\alpha$ 를 추가하여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정하는 소프트 타겟 방식을 선택

□ 권역별 효율체계 및 목표기금 도달기간

○ 은행권

- 회수율 평균 0.85 및 표준편차 0.15라는 가정 하에, 목표기금 규모는 보호예금의 2.409%로 결정되며, 표준보험료율을 부보예금의 0.1%로 정할 경우 현재의 적립기금 2조 1,820억원을 토대로 목표기금 도달에 11년 소요 예상

○ 증권권

- 목표기금 규모는 고객예탁금의 목표기금 규모와 합병증권사 목표기금 규모의 가중평균의 1.622%로 결정되며, 보험료를 고객예탁금에 0.1% 그리고 CMA 및 발행어음에 0.2%를 부과할 경우 목표기금 도달에 4년 소요 예상



○ 보험권

- 생보권의 경우 회수율의 평균 0.8 및 표준편차 0.2라는 가정 하에, 목표기금 규모는 보호예금의 2.046%로 결정되며, 현재의 적립기금 1조 5,356억원을 토대로 표준보험료를 책임준비금의 0.2%로 정하면 목표기금 도달에 12년 소요 예상
- 손보권의 경우 회수율의 평균 0.8 및 표준편차 0.2라는 가정 하에, 목표기금 규모는 보호예금의 2.449%로 결정되며, 현재의 적립기금 3,084억원을 토대로 표준보험료를 책임준비금의 0.25%로 정하면 목표기금 도달에 11년 소요 예상

○ 저축은행권

- 목표기금 적립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예상손실 추정치보다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저축은행권의 경우는 예상손실 추정치가 너무 커서, 예상손실보다 높은 보험료 책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 다만 향후 예상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기준보험료를 부보예금의 0.35%로 하고, 회수율 평균 0.65 및 표준편차 0.2라는 가정 하에, 목표기금 규모를 보호예금의 8.670%로 설정하면, 현재의 기금적자 8,825억원을 무시할 경우에는 도달기간이 25년으로 예상되고 이를 감안할 경우에는 32년으로 예상

□ 권역별 목표기금적립액과 목표기금률 요약

(단위: 억원)

업권	목표기금 적립액 (현가기준)	목표기금률 (보호예금기준, %)	예상손실률 (%)	도달기간 (년)		보험료율 (부보예금 대비, %)	현재적립금
				예상손실 발생 시	예상손실 미발생 시		
은행	57,238	2.409	0.124	11	6	0.1	21,820
증권	1,237	1.21	0.04035	3	2	0.1	1,147
합중*	560	3.0	0.10	4	3	0.2	350
종금	254	7.83	0.261	10	5	0.3	126
생보	29,016	2.046	0.130	12	5	0.2	15,356
손보	6,065	2.449	0.121	11	6	0.25	3,084
저축**	31,817	8.670	2.959	-	32/25	0.35	-8,825
합계	126,187						33,058

\* 2개 합병증권사의 CMA 및 발행어음에 대한 목표기금 규모임.

\*\* 저축은행의 도달기간은 예상손실을 0으로 가정한 경우이며, 누적손실 감안하면 32년 그리고 감안하지 않으면 25년 소요 예상

□ 예상외 손실과 요율체계의 조정

- 목표기금대의 상하한을 벗어나는 예상외 손실 발생 시 손실률을 다시 추정하여 목표기금, 목표기간 및 목표기금 보험료율 재산정

□ 리베이트와 요율체계

- 적립기금이 목표기금의 하한에 못 미칠 경우에 적용할 인상률과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할 보험료 환급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

## □ 정리비용의 분담

### ○ 예상의 손실

- 손실규모가 기금적립액 이내인 경우는, 권역별로 자체 적립한 기금으로 손실 보전
- 목표기금 달성 이전의 일정시점에서, 손실규모가 기금적립액을 초과하거나 최종 목표기금 규모를 초과하는 기금파산의 경우 우선 적립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 나머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별 권역의 생존 부보기관들로부터 사후각출하거나 또는 예보채 발행하여 조달 후 사후정산
  - 사후각출은 부보기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완급을 결정하되 사전에 예보와 금융회사 간 약정을 체결하여 실제 행사를 담보
- 다만 손실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또는 여러 권역에 걸쳐 발생하여 시스템위기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함.
  - 시스템위기 판정 및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제1장 2-1-2.' 참조

## □ 보험료 부과대상(base)

### ○ 부과대상 선정원칙

- 소액예금자 보호를 통한 금융안정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완화에 기여하도록 부과대상을 선정
  - 부과대상은 객관성, 측정가능성, 예보의 자료접근이 담보되어야 하고 아울러 부보기관의 비용부담 회피 가능성 예방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이 고려될 필요
- 은행 및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보호예금, 즉 보호한도 내 부보예금을 제안하며, 부보예금도 수용 가능

- 보호예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지표로 판단

○ 보험의 경우는 보호한도 내 책임준비금을 제안하며 책임준비금도 수용 가능

- 현행의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평균은 중복계산 등의 이유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 증권은 현행 부과대상인 보호대상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선물, 옵션거래 및 청약자 예수금을 보호대상으로 편입하고, 고객예탁금 중 일부 담보금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

#### □ 보호한도

○ 보호한도는 원칙적으로 권역에 관계없이 현행 5,000만원을 유지

- 다만 손보의 제3자 보호와 관련해서 법정 의무한도인 경우 예외적으로 1억원까지 보호

#### □ 법정최고요율

○ 현행 부보예금(보험의 경우 부보대상 책임준비금)의 0.5%를 유지

- 요율체계의 조정이 한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최고요율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 만약 권역별로 법정최고요율을 달리할 때 자칫 예금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상존

## 제 11 장 금융권역별 개선방안

## 제 II 장 금융권역별 개선방안

### 1. 은행권

#### 1-1. 목표기금제 도입 방안

##### 1-1-1. 기본방향과 원칙

- 목표기금제 도입 시 미래의 부실발생 가능성, 예상손실액, 비상시 자금조달 가능성, 부보금융기관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목표기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이론적으로 기금의 규모는 미래의 손실 발생 확률분포에서 적정 신뢰구간을 선택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음.
  - 그러나 미래 금융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또한 현실적으로 정치·사회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손실의 분포에 따른 엄밀한 의미의 적정 기금규모라기보다는 준거(anchor)로서의 의미
- 목표기금은 운영비용 및 기대손실(expected loss)은 물론이고, 가능성은 낮지만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unexpected loss)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
  - 위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매우 예외적인 손실(exceptional loss)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후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정부가 시스템위기로 판단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VaR 모형에 기초한 CreditMetrics 방법을 사용하여 은행권 기금손실의 확률분포를 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목표 기금 규모를 추정하였음.

○ 그 결과 은행권의 경우 99% 신뢰수준 하에서 부실을 처리하면서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권 보호예금의 2.41%에 해당하는 5.7조원(현가기준)의 기금 준비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 기초할 때, 은행권 목표기금률을 보호예금의 2.4%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현재의 은행권 기금수준에서 정상적인 부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기금목표에 도달하는 데 11년이 소요되며, 기금 목표 도달기간 중에 은행부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목표기금 규모 설정 시에는 VaR 모형에 의한 계량적 분석방법과 병행하여 금융여건 등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 방법을 병행할 필요

○ 은행권의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어도 대형 은행 1개사 및 중소형 은행 1~2개사 정도의 부실처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적절해 보임.

○ 보호예금 규모가 약 30조원 정도인 대형 은행과 보호예금 규모가 5조원 내외의 소형 은행 2개사가 동시에 도산할 경우, 손실률을 15%로 가정하면 약 6조원 정도의 기금 손실이 발생

### 1-1-2. 도입시기

□ 목표기금제는 각 금융권별로 도입 여부 및 시기를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은행권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금융 안정화가 대체로 정착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기금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 2007년도에 관련법 개정이 완료된다는 전제 하에 2008년도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 목표기금제와 차등료율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2008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2009년도부터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 1-1-3. 보험료율 조정방안

- 은행권의 기금 적립목표 설정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
  - 예금보험기금이 적립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목표기금 보험료율을 가급적 안정적으로 유지함.
    - 보험료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은행들의 미래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불필요한 이해상충을 줄이며 보험료율 조정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
  - 예금보험위원회는 기금 적립금액이 적립목표의 하한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또는 적립기간을 조정하고 적립목표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환급률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1-1-4.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기준의 현황과 대안 검토

- 이론적으로 볼 때,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예금보험이 직접 적용되는 예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 수익자 부담 원칙 외에도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 확보, 정보의 비대칭성 및 무임승차 등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 예금보험료 수납 및 관리의 용이성 확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의 객관성 확보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

○ 부과대상 기준의 대안

[제1안]: 보호한도 내 보호예금

[제2안]: 부보예금(현행 유지)

[제3안]: 총부채 - 후순위채

[제4안]: 위험가중자산

- 본 용역팀은 [제1안]이 이론적으로, 도덕적 해이의 통제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권고, 다만 차선택으로 [제2안]을 선택하는 것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1안]에 비해 [제2안]은 부과대상 계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비용을 절감하고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

- [제2안]은 비부보예금 등의 일시적 인출가능성 등 동태적 효과(dynamic effect)를 고려하는 경우 [제1안]보다 예금보험기금 손실 감축 측면에서 우수할 가능성

1-2. 차등료율제 도입 방안

- 차등료율제(risk based premium system)는 개별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금에 발생시킬 수 있는 손실위험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 부보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며 건전경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험성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차등료율제를 도입할 필요
- 차등료율제의 긍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시장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에게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유인을 제공함
  - 예금보험공사에게 위험관리 수단을 부여하고, 은행의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위험선호 행동을 축소하고 건전 경영을 확립하려는 유인을 제공
-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이 증대되며, 차등보험료율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자의 신뢰도가 더욱 하락하여 부실화를 가속화 할 가능성
- 은행권의 경우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32개국이 차등료율제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1993년에 도입하였으며, 자본비율과 감독당국의 감독등급(federal regulator's rating)를 고려한 2단계 과정을 통해 보험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 캐나다는 자본 적정성(capital adequacy), 기타의 양적 지표(quantitative factors) 및 질적 지표(qualitative factors) 등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계한 총점으로 결정하는 점수부여(scoring) 방식을 토대로 하는 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음.

- 논의 초기에는 예금보험제도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공동보험(coinsurance)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미국에서 차등료율제를 도입함에 따라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의 제안으로 차등료율제를 도입

#### □ 차등료율제 도입 방안

- 도입 시기: 현재 국내 은행들의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금융권 전반이 비교적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목표금제와 차등료율제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평가지표: 차등료율 책정을 위한 위험도 측정을 위한 지표는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차등등급의 보안 유지: 차등등급 정보는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진과 이사회에만 통보되어야 하며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차등평가 등급의 수: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 수가 많지 않을 경우 4개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차등의 폭: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보험료 수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등 폭을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
  - 은행에 대한 정확한 위험평가 등을 위한 제반 제도와 장치가 확립되면서 등급 간 차등 폭을 확대해나갈 수 있음.
- 평가 주기: 연말결산일 기준으로 연 1년 실시

- 자료의 정확성: 자료의 정확성은 차등료율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요청과 공동검사 참여 요구가 필수적
- 금융감독유관기관들과의 조정: 예보를 포함한 금융감독유관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금융감독정보 DB를 구축하고 이 DB에서 각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하도록 함.
- 이의신청제도: 보험료율 산정과 차등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사전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함.
- 신규은행의 경우 기존은행들과 달리 위험도를 적절히 평가할 정보가 부족하므로 적정 보험료 책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업권별 표준보험요율을 부과
-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과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들과 동일한 기준의 차등료율제를 적용함.

## 2. 증권권

### 2-1. 역사적 배경 및 향후 환경변화

- 증권권은 1997.12.31일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의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
  - 1999년 이후 고객예탁금에 대해서 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추가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음.
  -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될 경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압목적으로 예금보험이 확장될 위험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음.

보호대상 예금의 변경 여부

- 선물·옵션거래 예수금과 청약자 예수금은 새롭게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 자기신용대주 담보금과 신용공여 담보금은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보호한도의 변경 여부

- 현행 보호한도인 고객 당 5,000만원 유지

**2-2. 차등료율제와 목표기금제 도입방향**

보험료 부과대상

- 보호예금으로 변경하되, 현행 방식의 유지도 수용 가능한 대안임.

증권분야에 대한 차등료율제 도입 방안

- 고객예탁금 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증권분야에 차등료율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다만 원본보장 CMA 계좌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합병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보료와 CMA 계좌에 대해 예보료를 차등화 하는 제한적 차등료율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합병종금사에 대한 보험료율 변경은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하고, 일반 증권사에 대한 새로운 요율 변경은 목표기금제 도입과 함께 추진

증권분야에 대한 목표기금제 도입 방안

- 목표기금제는 해당 금융업권의 전체 위험과 연관되는 것이므로 증권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목표기금 규모는 고객예탁금의 경우 보호예금(위험노출액)의 1.2106% 정도로 추산됨.
    - 보험료를 부보예금(고객예탁금)의 0.1%로 책정하면 제도 도입 3년 후에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손실이 없을 경우에는 2년 후에 도달 가능
  - 목표기금제의 시행은 은행권의 시행시기와 일치시키되, 만일 별도의 증권투자자 보호제도가 출범할 경우에는 목표기금제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
- 차등료율제와 목표기금제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 증권분야에서 제한적인 차등료율제를 시행하는 것은 증권회사의 경영 인센티브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증권분야에서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증권업의 고객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조세 부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

### 3. 종금권

#### 3-1. 목표기금제

- 2개 사에 불과한 종금권은 목표기금제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적절
- 현재 2개인 종금사에 대해 별도의 계정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바, 목표기금 규모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통계적 유의성 및 논리적 설득력이 결여된 상태

- 2개의 종금사만을 대상으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현실적으로 목표기금을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2개 종금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금사가 도산할 경우 동 기금만으로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그 비용을 잔존 종금사가 전액 부담하기도 곤란할 것이므로 목표기금제 도입의 논리적 설득력 결여

○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안들을 검토

- [제1안]: 목표기금을 설정하지 않고 현행 보험료율을 당분간 적용
- [제2안]: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권의 목표기금제 시행에 맞춰 종금권 고유의 목표기금제를 도입
- [제3안]: 종금권의 기금을 증권권 기금과 통합하여 운영

○ 2개 회사에 불과한 종금권을 대상으로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고 실익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목표기금제 도입을 유보하는 [제1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현존 종금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99% VaR 수준에서 보호예금의 7.83%(부보예금의 3.47%)에 해당하는 254억원(현가 기준)의 기금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종금권 목표기금제를 즉시 도입하지 않더라도 종금권 기금이 동 수준에 도달할 경우 예금보험료를 감면 혹은 환급하는 잠정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만일 1개 종금사가 퇴출되어 1개 종금사만 잔존하게 된다면 종금권 목표기금의 의미는 사실상 상실되며, 이 시점에서 종금권 기금을 증권권 혹은 저축은행권 등 타 금융권 기금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검토

## 4. 보험권

### 4-1. 보험권 기본체계

#### □ 보험계약의 예금보험

- 보험권 예금보험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일시에 대규모로 해약할 가능성, 즉 보험계약 해약사태(insurance run)를 예방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
- 해지수수료가 높고 따라서 해약률이 낮다는 특성은 보험권 전체적으로 해약사태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
  - 그러나 어떤 금융기관의 위험노출 및 이로 인한 예보의 손실 가능성은 금융기관의 위험선호도, 위험관리 능력, 건전성 규제·감독 등의 함수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 해외사례

- OECD 회원국 중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9개국이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운영
  - 이들 중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한국, 폴란드, 영국, 미국 등 7개국이 생보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를 제외한 8개 국가가 손보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 중

#### □ 생보기금과 손보기금의 구분 관리

- 현재 단일기금 내에서 구분계리



- 다른 금융권의 금융계약과 보험계약의 상이함 그리고 손보와 생보 계약 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권 기금을 타 금융권 기금으로부터 분리하고 생보와 손보 간에도 기금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 예보료 부과대상의 선정

- 보험권의 현행 부과대상은 부과대상='책임준비금+수입보험료'의 1/2인 바, 저축보험료 중복 계산 등의 문제점 존재
- 도덕적 해이 통제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보호예금, 즉 보호한도 내 책임준비금(비보호대상기관 해당 분 제외)이 부과대상으로 선호되지만, 책임준비금 자체도 차선택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부과대상의 확대는 사후적으로 보호대상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확대가 우려되는 반면, 부과대상의 축소는 소액예금자 부담의 가중 및 보험사 입장에서 거액의 보험계약 유치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구분 보고에 따른 실무상의 어려움도 예상됨.

#### □ 보호한도의 예외 인정

- 현재 보험권은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 당분간 5,000만원을 보호한도로 유지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1억원 이하에서 법정한도까지를 보호하도록 함.

- 보호한도를 높이면 단기적인 금융안전성은 제고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확대되어 시장의 안정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현행 제도가 그간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제도 변경의 한계적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제3자는 선의의 비자발적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
  - 보험권의 경우 보호한도를 높이면서 공동보험(coinsurance) 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 통제에는 기여할 것이나 타 권역과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부담이 있고, 특히 이를 제3자 보호에 적용하는 것은 범정보호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

#### □ 사전기금 vs 사후각출과 정부 개입

- 일정한 시점에서 생보 및 손보 각각의 손실발생 규모가 권역별 목표기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해당 권역의 기금파산으로 정의
  - 권역별 목표기금을 초과하는 손실은 해당 권역의 생존 보험사들이 각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정부가 일정한 방식에 의거 이를 시스템위기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
- 사전기금의 적립은 연도별로 상하한 밴드를 중심으로 하되,
  - 예상손실과 예상외 손실을 대상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 평가를 반영하는 차등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함.

- 사후각출에서는, 현재의 특별기여금 지급에서처럼, 생존 보험사들이 '손실금-기금적립금'을 '부보예금×일정한 보험료율'의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함.

- 여기서 일정한 보험료율은 미래지향적인 위험과 직접 연계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 4-2. 목표기금제

##### □ 도입의 취지

- 일단 유사 시의 유동성 및 신뢰성 확보
- 사전 적립규모의 현실적 상한 설정
- 예보료 지급 부담 감소 및 예측성 제고
- 구조조정 이후 금융기관 수 감소에 따른 집중화 문제 대응

##### □ 해외사례

- 프랑스에서는 생보 보호기구가 사전과 사후를 혼합한 형태의 목표기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손보의 경우는 의무보험만을 대상으로 사전방식의 목표기금제를 운영
- 캐나다 생보보호기구(Assuris)는 사후각출방식으로 운영

##### □ 사전기금 적립목표

- 생보권 적립목표는 신뢰수준 99% 및 예상 손실률 0.130%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음.
- 목표기금 규모는 현가 기준으로 2조 9,016억원, 목표기금률은 보호예금의 2.046%

- 보험료를 책임준비금의 0.2%(보호예금의 0.240%)로 정할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 1조 5,356억원(보호예금의 1.083%)을 토대로, 12년 후(기금손실 없을 경우 5년 후)에 목표기금 달성 가능
- 손보권 적립목표는 신뢰수준 99% 및 예상 손실률 0.121%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음.
  - 목표기금 규모는 현가 기준으로 6,065억원, 목표기금률은 보호예금의 2.449%
  - 보험료를 책임준비금의 0.25%(보호예금의 0.269%)로 정할 경우, 현재 적립된 기금 3,084억원(보호예금의 1.244%)을 토대로, 11년 후(기금손실 없을 경우 6년 후)에 목표기금 달성 가능
- 위의 적립목표는 생보권의 경우 중형사 3~4개 그리고 손보권의 경우 중형사 1~2개의 파산 시 예보의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

□ 상하한 밴드와 사후조정

- 연도별 목표적립률에  $\pm a$ 를 추가하여 연도별 밴드(적립목표의 상하한) 설정
  - 매년 (목표적립률 $\pm a$ )를 기준으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상한 초과 및 하한 미달 시에 각각 보험료 환급률과 인상률 결정
- 목표기금 도달 이전에 부과대상의 증감 또는 비교적 작은 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밴드를 벗어날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요율과 기간을 조정
- 일단 최종 목표기금의 하한에 도달한 후에는 매년 '실제보험료율=연간기대손실률 $\times(1\pm\%$ 할인 $\cdot$ 할증률)'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권 사후각출

- 목표기금을 완전히 적립하기 전까지, 생보권과 손보권 각각은 권역별로 발생하는 손실이, 손실발생 시점에서 각 권역이 적립한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생존 보험사들에게 사후각출방식으로 분담시킴.
- 해당 보험권에 발생한 손실금액 중 기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생존 개별보험사들이 부보예금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사후각출 분담금 계산

4-3. 차등료율제

□ 도입의 취지

- 보험권 전체에 대한 신뢰 및 시장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 선진화에 기여
  - 그러나 단기적인 시장 불안정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위협평가를 위한 예보의 정보획득 방안

- 은행권에서 언급된 감독정보 DB 구축을 포함하는 금융감독유관기관들 간 정보의 공유 및 소통 활성화 방안을 보험권에도 추진함.
-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않아서 예보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험사들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 차등료율제 도입방안

- 2009년부터 생보권·손보권 동시 도입을 추진
- 도입 초기에는 차등 폭을 작게 유지함.
  - 예컨대 보험사들을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3등급을 기준으로 표준요율의 -5%(1등급), -2.5%(2등급), 0(3등급), +2.5%(4등급)에 해당하는 할인·할증률을 적용함.
- 신규 진입 보험사의 경우, 진입 후 5년 간 권역별 평균요율 적용
-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충격을 최소화
- 평가는 연말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하되, 반기별로 이상 징후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여 금융기관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함.

## 5. 저축은행권

### 5-1. 저축은행권 현황

- 2001년~2005년 동안 금융권역별 '보험료지급액/영업손익' 비율의 평균은 은행은 5.8%,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7.9%와 6.0%, 증권은 1.6% 그리고 저축은행은 98.9%임.
- 저축은행의 신보험기금 손실액은 2006년말 기준 1조126억원이며, 회수율을 고려하면 기금부족액이 2006.6월말 기준 6,697억원이고 2006년말 기준으로는 8,825억원

## 5-2. 목표기금제

□ 목표기금제도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신예금보험기금의 부족분과 저축은행의 잠재부실 우선 해결 바람직

- 저축은행권은 신예금보험기금 적자를 다른 금융권의 계정에서 차입하여 보전하고 있는 실정
- 손실 기준 및 BIS 비율만으로 보면, 저축은행권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진행중이라 할 수 있음.

□ 저축은행 신예금보험기금 부족분의 정의와 처리 방안

- 기금 부족분은 저축은행의 현황으로 보면 두 가지로 정의 가능

(정의 1): 기금부족분=신예금보험기금 부족분

(정의 2): 기금부족분=신예금보험기금 부족분 + 잠재부실추정치

- 잠재부실이 현재화되면 저축은행의 기금 부족이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기금부족분의 정의로는 (정의 2)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기금 부족분에 대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처리방안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바, 금융권 내에서 공동 해결하는 [제1안] 또는 저축은행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2안]이 있겠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제3안] 및 [제4안]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제5안]과 같이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

[제1안]: 계정간 차입이자 지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자율 인하

[제2안]: 저축은행 보험료 인상과 차등료율제 시행으로 기금부족분 해결

[제3안]: 특별회계를 이용한 무이자 지원

[제4안]: 예보채 상환기금의 초과 회수자금 활용

[제5안]: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하되 경제적 논리에 적합하도록 [제1안] ~ [제4안]을 적절히 결합

□ 기금의 운용수익률 5%, 보호예금의 연평균 성장률 6%를 가정하고, 회수율의 평균 0.65와 표준편차 0.2를 사용할 때 목표기금 규모는 보호예금의 8.67%, 예상손실률은 2.959%임.

○ 목표기금 적립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예상손실 추정치보다 커서 예상의 손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축은행권의 경우는 예상손실 추정치가 너무 커서, 보험료를 예상손실 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다만 예상손실이 없다는 가정 하에, 보험료를 부보예금의 현재 0.3%에서 0.35%(보호예금의 0.396%)로 인상할 경우, 목표기금에 도달하는 데 25년 소요 예상

- 8,825억원의 기금 적자(2006년말 기준)를 감안하고 현재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 목표기금에 도달하는 데 32년 소요

- 부보예금의 0.3%인 현재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목표기금 도달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것임.

○ 보호예금의 8.67%인 목표기금률을 전제로 예보가 예금 대지급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수는 자산규모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약 5개 또는 2,000억원 이상부터 5,000억원미만까지의 중소형 저축은행 기준으로는 약 25개 정도



□ 2단계 도입방안의 추진

- [1단계]에서는 예보기금 적자 보전, 감독체제 정비 및 감독의 강화, 차등료율제 도입 등을 통해 저축은행권의 정상화를 유도
- [2단계]에서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차등료율제와 연계하고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 [2단계]로의 진입은 기금부족분이 해소되고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안정화되어 차등료율 4등급으로 평가되는 저축은행 수가 현재의 20%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하는 시점이 적절해 보임.

□ 예보의 사전적 위험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보가 적기시정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5-3. 차등료율제

- 저축은행들 간 건전성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고위험·고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기관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 저축은행들 간 형평성 문제 및 감독 실패 가능성
- 정부의 지원을 끌어 들이는 소위 'too-many-to-fail'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차등료율제의 조기 도입이 바람직
  - 감독당국의 규제 유예나 감독 실패로 인한 적기시정조치 지연으로 발생하는 정리비용의 증대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
  - 또한 저축은행의 시장규율 및 규제규율이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차등등급 도입은 목표기금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 기대

□ 차등보험료 요율체계와 그 실행방안

- 목표기금 도입 이전의 차등료율 체계는 ‘기준보험료율 ±할인·할증률’이 됨.
  - 기준보험료율을 현행의 0.3%에서 0.35%로 인상하고 차등등급에 따라 할인·할증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증가된 보험료 수입으로 저축은행 기금 적자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
    - 이러한 자체 노력과 함께, 기금 적자 보전 및 잠재부실 해결을 위한 제반 이해당사자들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차후 차등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최소화에 기여
- 할증보험료율 결정모형에는 정량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지표를 포함하여 운영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함.

□ 차등료율제 도입방안

-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료율제 도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확인 능력을 보유해야 함.
  - 정성지표 산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차등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제를 법제화할 필요
  - 금융안전망 관련 기구들이 수집한 차등보험료의 할증료율 산정에 관련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함.

□ 차등료율제 도입 시기

- 차등료율제도 도입방안에서 요구되는 권한이 예금보험공사에 허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가능한 한 조기(예, 1년 이내)에 시행할 필요

-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시행해 온 차등보험료 제도는 목표기금에 연계되도록 조정함.

## 제III장 정량분석

## 제 III 장 정량분석

### 1. 신용 VaR를 이용한 예금보험료 산출

#### 1-1. 신용 VaR의 시뮬레이션

##### 1-1-1. 연구모형의 개요

- 본 연구에서는 JPMorgan의 CreditMetrics 방법을 근간으로, 부도가 발생한 경우만을 손실로 가정하는 부도모형(default model)으로 손실분포를 추정하여 얻어진 예금보험기금의 손실분포로부터 신용 VaR (Credit VaR)를 구하는 방법론 사용

##### 1-1-2. 입력 변수에 대한 가정과 추정

###### 가.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 PD)

- 부도율 추정은 기본적으로 주가를 이용하여 옵션모형으로부터 도산거리를 추정하는 EDF(expected default frequency)방법을 사용
- 옵션모형과 재무자료로부터 얻은 자산의 변동성 자료를 결합하여 도산거리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EDF를 구함.
  - 도산거리는 자산가치와 변동성이 주어진 경우,  $\mu$ 의 성장률로 증가하는 자산의 1년 후 시점의 가치와 부도점 간의 피리올을 자산변동성으로 표준화 한 값임.
  - 본 연구에서는 옵션모형에서 추정된 자산변동성( $\sigma_A$ )을 재무제표의 자산가치의 변동을 이용하여 조정한 후 도산거리를 구함.

- 추가자료가 없는 부보기관의 자산변동성( $\sigma_A^2$ )은, 추가자료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옵션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sigma_A^2$ 를 가장 잘 적합(fit)시키는 식을 찾아서 추정치를 구함.

○ 도산거리를 구한 후 도산거리를 부도확률로 mapping하는 데 t 분포를 가정하여 EDF를 구함.

□ 각 권역별로 도산거리를 부도확률로 mapping하는 데 사용한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은 행 : t 분포 자유도 (degree of freedom: d.f.) = 40

○ 손해보험 : t 분포 d.f. = 4

○ 생명보험 : t 분포 d.f. = 8

○ 증권사의 경우는 손해보험사와 같은 분포 가정

□ 저축은행의 부도확률은 상장된 저축은행의 수가 전체 10%도 되지 않는 10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옵션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결합한 결합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 나. 상관관계계수

□ 주가가 존재하는 손보사와 증권사의 경우에는 주가를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추정하고, 비상장 금융기관들을 포함하고 있는 은행, 저축은행, 생보사의 경우에는 ROA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계수를 추정

#### 다. 위험 노출금액(exposure at risk: EAR)과 손실률

□ 위험노출금액(EAR)

○ 각 부보기관의 부보예금 중 5000만원 이내의 보호예금

- 은행과 저축은행의 EAR은 예금 중에서 일인당 5천만원까지의 보호예금을 사용
- 보험사의 EAR은 책임준비금 중 일인당 5천만원 이내의 금액
- 증권사의 EAR은 고객예탁금과 합병증권사의 CMA, 발행어음 중 일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함.

□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

- 부보기관에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순손실액은 부실처리 투입액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임.
- 회수율은 예금보험공사가 P&A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도가 난 후 개입하여 보호한도 내 예금만을 대지급한다고 가정하고 그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나타냄.
- 회수율 가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부채대비 EAR의 비중임. 이는 부도를 추정 시, 부도점(default point)을 자산이 부채의 97%에 미달하는 점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임.
  - 회수율은 은행 0.85, 증권사 0.7, 증권금융 0.9, 보험사 0.8 그리고 저축은행 0.65를 가정
- 회수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절
  - 실제 회수되는 정도는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액을 단순히 평균 회수금액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
  - 본 연구에서는 각 부보기관에 있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달리하여 베타( $\beta$ )분포로부터 회수율을 시뮬레이션 함.

### 1-1-3. 시뮬레이션 절차

□ 각 부보기관의 부도율, 상관계수 및 회수율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손실분포를 생성하고 95%, 97.5%, 99%, 및 99.7%의 VaR 값을 추정함.

- 또한 이 값들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VaR 값의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을 구함.

### 1-1-4. 시뮬레이션 결과

□ 은행

<표 III-1-1> 은행의 신용 VaR (EAR=2,376천억원)

<회수율 평균: 0.85, 표준편차: 0.15> (단위: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대손실액/EAR	0.124	0.010	0.106	0.137
95% VAR	0.809	0.072	0.668	0.916
97.5% VAR	1.440	0.090	1.283	1.598
99% VAR	2.409	0.137	2.197	2.718
99.7% VAR	4.073	0.278	3.485	4.583

□ 증권회사

○ 증권사의 목표기금은 시뮬레이션에 의한 손실분포로부터의 추정하기보다는 ad hoc하게 추정함.

- 일반 증권사의 EAR 중 고객예탁금과 합병증권사의 CMA와 발행어음은 신용위험이 다르므로 따로 추정함.



- 목표기금은 EAR의 기대손실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목표기금 수준을 결정함.
- 고객예탁금에 대한 신용위험은 증권사의 신용위험과 증권금융의 신용위험을 각각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99% VaR가 EAR의 1.21%임.
- 종금사 합병증권사(동양종금증권, 우리투자증권)의 부보대상인 CMA와 발행어음에 대한 99% VaR는 EAR의 3%임.

□ 생명보험사

<표 III-1-2> 생명보험의 신용 VaR (EAR: 1,418천억원)

<회수율 평균: 0.8, 표준편차: 0.2> (단위: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대손실액/EAR	0.130	0.011	0.117	0.154
95% VAR	0.785	0.057	0.680	0.877
97.5% VAR	1.354	0.080	1.235	1.478
99% VAR	2.046	0.119	1.877	2.234
99.7% VAR	3.841	0.722	2.851	5.889

□ 손해보험사

<표 III-1-3> 손해보험의 신용 VaR (EAR: 248천억원)

<회수율 평균: 0.8, 표준편차: 0.2> (단위: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대손실액/EAR	0.121	0.027	0.082	0.170
95% VAR	0.532	0.082	0.403	0.696
97.5% VAR	1.126	0.196	0.868	1.450
99% VAR	2.449	0.696	1.645	3.868
99.7% VAR	6.949	1.775	4.056	10.892

□ 저축은행

<표 III-1-4> 저축은행 신용 VaR (EAR=367천억원)

<회수율 평균: 0.65, 표준편차: 0.2> (단위: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대손실액/EAR	2.959	0.046	2.908	3.041
95% VAR	6.553	0.216	6.338	7.012
97.5% VAR	7.589	0.287	7.291	8.270
99% VAR	8.670	0.320	8.143	9.330
99.7% VAR	10.183	0.537	9.200	11.084

1-2. 목표기금 예금보험료 추정

1-2-1. 부보기관별 적정 VaR 값

□ 예금보험기금의 경우 일반 금융기관 같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적정 신뢰수준을 선택하는 데 VaR 값의 분포도 고려해야 함.

○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99% VaR 값을 목표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1-2-2. 목표기금과 목표기금 예금보험료

가. 은행권

□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5%, 보호예금의 연평균 성장률은 1.02%를 가정함: 회수율 평균 0.85, 표준편차 0.15 가정 하에 목표기금 규모는 보호예금의 2.409%이고 예상손실률은 0.124%임.

○ 보험료를 부보예금의 0.1%(보호예금의 0.194%)로 하면 현재 적립된 기금 2조 1,820억원을 토대로 11년 후에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다만 손실이 없을 경우에는 6년이면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나. 증권권

□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5%, 고객예탁금 성장률은 8%를 가정함: 목표기금 규모는 EAR의 1.2106%이고 예상손실률은 0.04035%임.

○ 보호예금이 고객예탁금의 90%인 경우를 가정하고 보험료를 고객예탁금의 0.1%로 정하면 현재 적립된 기금 1,147억 원으로부터 3년 후에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다만 손실이 없을 경우, 2년이면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합병증권사(동양증권증권, 우리투자증권)의 종금계정의 경우에는 0.2%의 보험료를 부과

○ 보험료를 부보예금의 0.2%로 하면 현재 적립된 기금 350억 원으로부터 4년 후에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다만 손실이 없을 경우, 3년이면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증권권의 목표기금은 전체 보호예금의 1.622%(고객예탁금의 목표기금 규모와 합병증권사의 목표기금 규모의 과거 4년 비율의 가중평균)

- 보험료는 고객예탁금에 대해 0.1%, CMA 및 발행어음에 대해 0.2%를 부과할 경우, 3년~4년이면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다. 종금권

□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5%, 부보예금의 연평균 성장률은 5%를 가정  
합: 회수율 평균 0.85가정 하에서 목표기금 규모는 EAR의 7.83%  
이고 예상손실률은 0.261%임.

○ 보험료를 부보예금의 0.3%(보호예금의 0.677%)로 정하면 현재  
적립된 기금 126억원을 토대로 10년 후에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다만 손실이 없을 경우에는 5년 후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라. 생보권

□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5%, 책임준비금의 연평균 성장률은 7%를 가  
정함: 회수율 평균 0.8, 표준편차 0.2 가정 하에서 목표기금 규모는  
EAR의 2.046%이고 예상손실률은 0.130%임.

○ 보험료를 책임준비금의 0.2%(보호예금의 0.240%)로 하면 현재  
적립된 기금 1조 5,357억원을 토대로 12년 후 목표기금에 도달  
할 수 있음.

- 다만 손실이 없을 경우에는 5년 후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용성의 문제가 있는 2개 외국법인과 차등료  
율제 적용이 어려운 외국지점형태의 생보사는 목표기금 산출대상  
에서 제외하였음.

#### 마. 손보권

□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5%, 책임준비금의 연평균 성장률은 7%를 가정함: 회수율 평균 0.8, 표준편차 0.2의 가정 하에서 목표기금 규모는 EAR의 2.449%이고 예상손실률은 0.121%임.

○ 보험료를 책임준비금의 0.25%(보호예금의 0.269%)로 하면 현재 적립된 기금 3,084억원으로부터 11년 후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다만 손실이 없을 경우 6년이면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용성의 문제가 있는 1개 국내사와 차등료율 제 적용이 어려운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들은 목표기금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바. 저축은행권

□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5%, 보호예금의 연평균 성장률은 6%를 가정함: 회수율 평균 0.65, 표준편차 0.2의 가정 하에서 목표기금 규모는 보호예금의 8.670%이고 예상손실률은 2.959%임.

○ 저축은행권의 경우 예상손실 추정치가 너무 커서 보험료를 예상손실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다만 예상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목표기금 도달가능 기간을 추정해보면 보험료를 부보예금의 0.35%(보호예금의 0.396%)로 정할 경우, 25년 후에 목표기금에 도달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8,825억원의 기금 적자를 감안하면 목표기금 도달에 32년 걸릴 것임.

## 2. 권역별 차등평가모형

### 2-1. 은행권

#### 가. 국내은행

- 과거 은행의 부실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변수들로 지표 pool을 구성한 후, 2000년 2/4분기 및 3/4분기의 은행의 회계자료를 대상으로 부실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지표를 선정
  - 모형은 비모수적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Kendall의 tau와 비모수적 위치 검정 방법인 Wilcoxon 순위합검정을 사용
    - 자본적정성 지표 3개(BIS자기자본비율, BIS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지표 3개(자기자본대비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요주의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고정이하) 및 수익성지표 2개(총자산순이익률, 위험가중자산연결이익률)를 선정
  - 지표별로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구간 내에 변수들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고 또한 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간 내 최종 임계치를 설정
    - 지표 내 상위 20%, 40%, 60%, 80% 및 하위 20%는 지표별 가중치에 각각 1, 0.75, 0.5, 0.25 및 0을 곱하여 점수를 배분

-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평가부문 내 변수의 가중치 및 평가부문 간 가중치를 결정
  - 평가부문 내에서 평가지표들의 가중치는 동일하게 함.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지표의 평가부문 간 가중치는 30:25:25
- 차등보험료 시행 초기에는 계량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비계량지표(감독기관의 종합평가등급)의 비중을 낮춤.
  - CAMELS 등급에 대해 20%의 가중치를 부여

<표 III-2-1> 최종선정지표 및 가중치

평가 부문		평가부문 내 변수	평가부문 내 가중치	평가부문 간 가중치 (%)
계량지표	자본적정성	BIS자기자본비율	1/3	30
		BIS기본자본비율	1/3	
		단순자기자본비율	1/3	
	자산건전성	자기자본대비순고정이하여신비율	1/3	25
		요주의이하여신비율	1/3	
		대손충당금적립률(고정이하)	1/3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1/2	25
위험가중자산연결이익률		1/2		
비계량지표	CAMLES 등급		1	20

- 금융기관의 지표별 점수를 합제한 총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금융기관별 총점의 분포를 고려하여 4등급으로 분류

- 1등급 85점 이상, 2등급은 80점 이상, 3등급 65점 이상 및 4등급 65점미만
- 등급별 보험료율은 부보예금의 경우 3등급의 경우 0.1%(보호예금은 0.194%)를 기준으로,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10% 및 5% 할인 그리고 4등급은 5% 할증
  - 1등급, 2등급, 3등급 및 4등급의 보험료율은 부보예금 기준 각각 0.09%, 0.095%, 0.1% 및 0.105%로 최대 차등 폭은 1.5bp
  - 보호예금 기준 시에는 각각 0.1746%, 0.1843%, 0.194% 및 0.2037%로 최대 차등 폭은 2.91bp
  - 차등보험료율 실시 시 2006. 6월말 등급 기준 시 보험료 수입은 2004년과 2005년 각기 290억원씩 (보호예금의 경우 각기 292억원 및 304억원) 감소

<표 III-2-2> 보험료 수입 추이

(단위: 억원, 2006.6월말 등급 기준)

	단일보험료율		차등보험료율		보험료수입변동	
	부보예금 (0.1%부과) (A)	보호예금 (0.194%부과) (B)	부보예금 (C)	보호예금 (D)	부보예금 (A-C)	보호예금 (B-D)
2004.12월	4,666	4,659	4,377	4,366	△290	△292
2005.12월	4,769	4,843	4,479	4,539	△290	△304

나. 외은지점

- 본점 및 지점의 평가지표를 모두 이용하되, 외은지점 간 영업구조가 차별화되고, 예금보험기금 손실 위험이 본점 건전성으로부터 주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 본점의 가중치를 높게 둬.



- 평가지표는 본점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과 신용평가등급을 사용
- 지점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ROCA) 등급을 이용하고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는 제외
- 지표 등급구간 설정은 원칙적으로 국내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외은지점의 본점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등급구간은 국내은행이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받는 등급과 차등등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

<표 III-2-3> 외은지점 차등평가모형(안)

(단위: %)

		지표 명	가중치
본 점		BIS기준자기자본비율	30
		신용평가기구의 신용등급*	40
지점	자본 적정성	① BIS기준자기자본비율	5
		② 단순자기자본비율	5
	정성 지표	경영실태평가등급 (ROCA** 등급)	20

\* 3대 국제 신용평가사(Moody's, S&P 및 Fitch)에서 공표한 신용등급으로서, 장기 무보증 선 순위채 또는 장기에금에 대한 신용등급을 이용

\*\* 감독원의 최근 종합검사결과 :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operational controls), 법규준수(compliance), 자산 건전성(asset quality)

- 지표별 점수를 합계한 총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4등급으로 분류
- 차등보험료를 실시 시 2005년말 기준 보험료 수입 1.27억원 감소

<표 III-2-4> 보험료 수입 추이

(단위: 억원, 부보예금 대비)

	기존 고정보험료(A)	차등보험료(B)	
		금액(B)	보험료수입변동(B-A)
2005.12	33.63	32.35	△1.27

## 2-2. 보험권

### 가. 분석방법

#### □ 차등평가 자료

- 생보사 21개(외국법인 생보사 7개 포함)와 9개 국내 손보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32개와 40개의 지표 pool을 구성한 후에 최적지표 선정
  - 외국지점 형태의 생보사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는 차등료율제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

#### □ 지표 선정과 지표별 등급구간 선정

- 모수적 분석법과 비모수적 모형을 모두 사용
  - 비모수적 방법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Mann-Whitney U 분석법과 Kendall의 tau를 사용하고 이차적으로 로짓모형에 stepwise 분석법을 사용
  - 모수적 방법으로는 판별분석법을 고려하였으나 분포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에 관한 기본가정이 충족되지 못하여 분석방법을 비모수적 방법으로 국한
- 선정지표
  - 생보사의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 수정지급여력비율,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보험영업이익률 및 예정사업비 대비 총실제사업비율 등 6개 지표를 선정
  - 손보사의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 수정지급여력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률, 고정이하여신비율, 합산비율, 영업총이익률 및 해약환급금비율 등 7개 지표를 선정

○ 지표별 가중치 설정

- 지표별로 5개 등급구간 내에 동일하게 20%씩 분포되도록 임계치를 설정한 후에 주성분분석을 고려하여 지표부문별 가중치 설정하였으나 기간별로 등급분포가 불안정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균등하게 배분

□ 차등등급 구간 설정

○ 금융기관별 총점 계산

- 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보험사의 분기별 개별지표의 등급구간의 점수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분기별 점수를 산출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등급 부여

○ 등급 간 할인·할증률

-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표준요율의 5%와 2.5%를 할인하고 3등급은 할인할증이 없으며 4등급은 표준요율의 2.5%를 할증

나. 예보료 부과대상 변경과 차등료율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 생보권

○ 현행 부과대상의 규모 추이

- 부과대상이 증가(연간 10.1%)하는 추세를 보여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면 예보료 수입 증가가 예상됨.

- 목표기금제와 차등료율제 도입 시의 보험료(0.2%의 표준요율과 표준요율의 2.5%을 할인·할증률 단위로 사용)
  - 부과대상을 보호예금으로 변경할 시에는 예보료가 3,522억원으로 추정
    - 이는 고정료율 적용 시 대비 98.6%, 현재수준 대비 101.4%
  - 부과대상을 부보예금으로 변경할 시에는 예보료가 3,645억원으로 추정
    - 이는 고정료율 적용 시 대비 98.5%, 현재수준 대비 104.9%

□ 손보권

- 현행 부과대상의 규모 추이
  - 부과대상이 증가(9.6%)하는 추세를 보여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면 예보료 증가가 예상됨.
- 목표기금제와 차등료율제 도입 시의 보험료 (0.25%의 표준요율과 표준요율의 2.5%을 할인·할증률 단위로 사용)
  - 부과대상을 보호예금으로 변경하면 예보료가 675억원으로 추정
    - 이는 고정료율 적용 시 대비 104.3%, 현재수준 대비 92.9%
  - 부과대상을 부보예금으로 변경하면 예보료가 778억원으로 추정
    - 이는 고정료율 적용 시 대비 96.9%, 현재수준 대비 107.2%
- 부과대상의 조정에 따른 예보료의 감소는 부과대상의 연평균증가율에 의해 상쇄되는 효과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

### 2-3. 저축은행권

-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변수들로 지표 pool을 구성한 후, 2000.6월말~2002.12월말 자료를 대상으로 부실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지표를 선정
  - 모형은 비모수적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Kendall의 tau와 비모수적 위치 검정 방법인 Wilcoxon 순위합검정을 사용
    - 자본적정성 부문 3개(BIS자기자본비율, BIS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부문 3개(연체대출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가중부실자산비율) 및 수익성부문 3개(총자산순이익률, 수지비율, 위험가중자산대비순이익률)를 선정
  - 지표별로 5개 등급 구간을 설정하고, 각각의 등급 내에 20%씩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임계치를 설정한 후, 지표별 특성을 감안하여 최종 임계치 설정
    - 지표 내 상위 20%, 40%, 60%, 80% 및 하위 20%는 지표별 가중치에 각기 1, 0.75, 0.5, 0.25 및 0을 곱하여 점수 배분
  -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평가부문 내 변수의 가중치 및 평가부문 간 가중치를 결정
    - 평가부문 내에서 평가지표들의 가중치는 동일하게 줌.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지표의 평가부문 간 가중치는 40:30:30으로 부여
  - 저축은행의 경우 모든 은행에 대한 비계량지표(감독기관의 종합평가등급) 입수가 어려워 비계량지표 사용은 제외함.

<표 III-2-5> 최종선정지표 및 가중치

		평가부문 내 변수	평가부문 내 가중치	평가부문 간 가중치
계량지표	자본적정성	BIS자기자본비율	1/3	40
		BIS기본자본비율	1/3	
		단순자기자본비율	1/3	
	자산건전성	연체대출비율	1/3	30
		고정이하여신비율	1/3	
		가중부실자산비율	1/3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1/3	30
		수지비율	1/3	
		위험가중자산대비순이익률	1/3	

□ 각 저축은행의 각 지표별 가중치 및 등급별 점수를 감안하여 총점을 매긴 후 4등급으로 분류

○ 1등급 8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55점 이상 그리고 4등급 55점미만

<표 III-2-6> 저축은행의 등급별 분포

(단위: 백만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점수	85점이상	75점이상	55점이상	55점미만
2005	42개	17개	20개	30개
2004	20개	18개	23개	51개
2003	17개	12개	28개	57개
2002	11개	16개	28개	60개
보호예금평균	263,007	303,095	311,187	353,664
부보예금평균	313,949	332,683	341,468	371,700
자산규모평균	354,759	352,604	351,450	346,525

○ 저축은행권의 경우 기준요율(0.35%)이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할인·할증률을 완화하여 설정

- 보험료율은 부보예금의 경우, 3등급 0.35%(보호예금은 0.396%)를 기준으로 1등급과 2등급은 5% 및 2.5% 할인, 4등급은 2.5% 할증

- 1등급, 2등급, 3등급 및 4등급의 보험료율은 부보예금 기준 각각 0.3325%, 0.3413%, 0.35% 및 0.3588%로 최대 차등 폭은 2.63bp
  - 이 보호예금 기준 시의 보험료율은 각각 0.3762%, 0.3861%, 0.396% 및 0.4059%이고 최대 차등 폭은 2.97bp
- 차등보험료율 실시 시 보험료 수입은, 부보예금 대비 0.3%의 기존 고정보험료율 대비 시, 부보예금의 경우 2005년말 기준 150억원(보호예금의 경우 146억원) 증가
- 부보예금의 0.35%인 고정보험료율 대비 시 보험료 수입은, 2005년말 기준 부보예금의 경우 13억원 (보호예금의 경우 16억원) 감소

<표 III-2-7> 보험료 수입 추이

(단위: 억원)

기존 고정보험료율	차등보험료율		보험료수입변동	
	부보예금 (0.3%) (A)	부보예금 (0.35%) (B)	보호예금 (0.396%) (C)	부보예금 (B-A) (C-A)
974	1,123	1,120	150	146
부보예금 (0.35%) (D)	부보예금 (0.35%) (E)	보호예금 (0.396%) (F)	부보예금 (E-D)	보호예금 (F-D)
1,136	1,123	1,120	△13	△16

Memo